

제5조(성실의무)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훈련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갑”은 교육실시 2일전에 최종 마감하여야 하며, 마감 후 수정 및 정정이 불가하므로, 교육신청 전 충분히 확인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마감 후 교육비 환급 불가)

다. “갑”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잔여대금에 대한 지불의 의무를 갖지 않고 “을”은 기 지급된 훈련비를 “갑”에게 환불한다.

라. “을”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지정받은 내용과 인정·지정 신청시 관할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별첨)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지정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개발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비밀유지)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가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상기 비밀 유지 의무는 그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제7조(해지)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의 최고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훈련대금은 훈련생 인원수 및 훈련진행 정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제8조(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 간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갑

을

회 사 명 :

훈련기관명 : 한국경영원 인재개발원

주 소 :

주 소 : 광주 북구 중흥동 712-8, 한경빌딩6층

전 화 :

전 화 : (062)521-3370(F)521-3306

대 표 자 :

(인)

대표 이사 : 김 보 현

(인)

별첨 1. 훈련과정별 훈련감가신청서 및 훈련생 명단(계약체결일 현재 훈련생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훈련개시일 현재 확정된 훈련생을 계약상의 훈련생으로 본다)

훈련위탁계약서

본 계약의 “_____”(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한국경영원인재개발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건설공정실무 및 건설관련법 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계약의 범위) “갑”이 위탁한 건설공정실무 및 건설관련법 훈련과정 및 수행을 위한 다음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가. 훈련과정은 노동부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과정으로 다음(또는 별첨)과 같다.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시간)	위탁훈련생인원	훈련일정	1인당 훈련비	훈련교재
건설공정실무 및 건설관련법	1 (8)		2014. 04. 01 - 2014. 12. 31	50,000원	건설공정실무 및 건설관련법

나. “을”은 훈련운영에 있어 “갑”의 훈련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의 요구 시 훈련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갑”이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을”은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인원)

가. 계약기간은 건설공정실무 및 건설관련법 훈련을 수행하는 훈련기간과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나. 훈련기간 및 훈련인원

1)제1차 : 2014년 04월 01일 ~ 2014년 12월 31일 / 인원 : 명

단, 기간 및 인원은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훈련과정 인정(또는 지정)변경 등에 관하여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을”은 훈련생의 훈련수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제3조(계약금 및 지급)

가. 총 계약금액은 _____(₩ 원)으로 한다.

본 금액은 총 인원 _____명에 대해 1인당 _____ 50,000 원이며 훈련인원의 변경 시 자동 조정된다.

나. 훈련과정에 대한 대금 지급은 훈련시작일 전에 지급하도록 하나 협의에 따라 지급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다. 실시한 훈련비를 분기로 지급할 수 있다.

1) 1분기 : _____(₩) 2) 2분기 : _____(₩)
3) 3분기 : _____(₩) 4) 4분기 : _____(₩)

라. 계약금 및 지급은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상호 기록한다.

제4조(수료) “을”은 훈련과정 인정(또는 지정)상의 훈련수료 기준을 취득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 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5조(성실의무)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훈련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갑”은 교육실시 2일전에 최종 마감하여야 하며, 마감 후 수정 및 정정이 불가하므로, 교육신청 전 충분히 확인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마감 후 교육비 환급 불가)

다. “갑”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잔여대금에 대한 지불의 의무를 갖지 않고 “을”은 기 지급된 훈련비를 “갑”에게 환불한다.

라. “을”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지정받은 내용과 인정·지정 신청시 관할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별첨)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지정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개발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비밀유지)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가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상기 비밀 유지 의무는 그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제7조(해지)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의 최고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훈련대금은 훈련생 인원수 및 훈련진행 정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제8조(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 간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갑

을

회 사 명 :

훈련기관명 : 한국경영원 인재개발원

주 소 :

주 소 : 광주 북구 중흥동 712-8, 한경빌딩6층

전 화 :

전 화 : (062)521-3370(F)521-3306

대 표 자 :

(인)

대표 이사 : 김 보 현

(인)

별첨 1. 훈련과정별 훈련감가신청서 및 훈련생 명단(계약체결일 현재 훈련생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훈련개시일 현재 확정된 훈련생을 계약상의 훈련생으로 본다)